

## 4. 所得稅法 施行規則 改正令

總理令 第505號 1995. 5. 3

소득세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1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제4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영 제5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고 당해 사업자가 영 제12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②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1③영 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2. 관세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영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

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14조(필요경비의 안분계산) ①영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등) ①영 제48조 제1호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장기도급계약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영 제48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개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율 =  $\frac{\text{당해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③제2항에 규정하는 총공사예정비는 건설협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과세기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제21조(퇴직위로금등의 수입시기)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의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할인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 제2항 산식에서 “총리량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

제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5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text{지하도의 건설비} \times \frac{\text{임대면적}}{\text{임대가능면적}}$$

2. 영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text{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 \times \frac{\text{임대면적}}{\text{건축물의 연면적}}$$

③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6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frac{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times \text{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frac{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 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text{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times \text{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④영 제53조 제6항 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

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사

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7. 국제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특별소비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text{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61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사업자가 장기할부로 매입한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0조(시험연구용자산) 영 제62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31조(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상각액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이하인 때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한다.

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영 제62조 제1항의 삼각범위액 ×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월수}}{12}$$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9항과

동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분류는 최종제품의 생산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간제품 제조설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 업종별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영 제63조 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②영 제6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동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율을 말한다.

1.  $\frac{\text{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text{연간 생산가능량}} \times 100$

2.  $\frac{\text{연간 작업일수}}{\text{연간 작업가능일수}} \times 100$

③영 제63조 제4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63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나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즉시상각의 의제) 영 제67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

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등을 말한다.

제3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①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37조(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①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②영 제7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정자산 전체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의 자산가액 및 양도부분

의 가액은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8조(잔존가액의 감가상각)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상각기간 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 제2항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text{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2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영 제61조, 영 제75조, 영 제76조 및 영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영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지정기부금의 계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62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영 제80조 제1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 사단법인 한국 4-에이취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 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제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회의회 및 그 산하 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9.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10.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신보호공단에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2.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또는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제향경우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6.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8.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2.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23.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2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 전쟁기념사업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5.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1. 다음의 환경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 나.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
3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 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4.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현안봉사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6.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37.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38.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9.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40.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4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42.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발명진흥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4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 나. 사단법인 한국에이즈연맹
- 다.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 라.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마.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 바.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제45조(접대비의 계산) ①영 제83조 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를 말한다.

②영 제84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60(영 제8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text{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접대비} = \frac{60 \text{ (영 제8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1,000} \times \text{외화수입금액}$$

제46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등) ①영 제84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2.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 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육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 및 종합휴양업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련영업중 체육도장업

③영 제84조 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④영 제84조 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방소재 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대도시권(동법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에서 대도시권에서 제외한 지역을 포함한다)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영 제8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 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지출명세서에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접대비 지출명세서) 영 제85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며, 월수의 계산은 영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frac{12}{\text{직전과세기간의 월수}}$   
제48조(해외광고선전비의 범위) 영 제86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등의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5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등) ①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영 제90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을 영 제9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계상하는 유가증권평가총

당금은 영 제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총당금으로 본다.

③영 제90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0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이후에 천재·지변·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영 제90조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과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저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2조(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제53조(국민주택 취득자금의 범위) 영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제55조(건강진단의 범위) 영 제110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56조(입양자증명) 영 제1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57조(주택자금공제대상 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라 함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영 제1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특별공제) 영 제111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이 경우 당해 납세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그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의 계산)**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제63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세액  
(매매가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소득공제)×기본세율
2.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세액  
(매매가액-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  
득 기본공제)×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법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세액  
(매매가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  
공제)×기본세율
4. 법 제64조 제2항 제2호의 세액  
(매매가액-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  
득기본공제)×법 제104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  
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영 제184조 제1항 제3  
호 및 이 규칙 제88조 제3호에 규정하  
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 제1  
항의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130조 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  
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  
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  
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  
세서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  
유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  
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명세서
5.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37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

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

제66조(중간예납의 분납)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표준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에서 소득세 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8조(보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 영 제147조 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등"이라 함은 영 제18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48조 제3항의 경우

$$\text{수시부과세액} = \text{총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times \text{기본세율}$$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text{수시부과세액}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3. 산림소득의 경우

$$\text{수시부과세액} = (\text{산림소득금액} - \text{산림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제70조(농지의 범위)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양도일 현재 양도한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영 제15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특별시·광역시·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읍·면으로 최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

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생하는 재직증명서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

③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 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6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75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

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육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6. 제8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

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text{환지예정(교부)면적} \times \text{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에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에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에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frac{\text{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text{권리면적}}$

2. 환지에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에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frac{\text{권리면적}-\text{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text{권리면적}}$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건축물등의 정의) ①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61조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분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특정다목적댐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망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frac{\text{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text{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전기의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나. 기준시가조정월수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취득당시 영 제164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하고,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각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text{전기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 \times \frac{\text{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text{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거나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text{1주당가액} = \left( \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frac{\text{1주당 순손익액}}{\text{100분의 15}} \right) \div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③영 제165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frac{\text{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times \text{양도자산 보유월수}}{\text{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④영 제16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영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으로 본다.

⑤영 제16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을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영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frac{\text{국세청장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text{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times \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frac{\text{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text{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영 제166조 제4항 제1호 바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1년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②영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영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율) ①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

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left[ \frac{\text{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text{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text{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right] \times \frac{10}{100}$$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국제운송소득금액} \times \left\{ \frac{\text{국내총수입금액}}{\text{국제노선총수입금액}} + \frac{\text{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left( \text{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times \frac{\text{국내에서의 출항회수}}{\text{국제노선 출항회수}} \right)}{\text{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frac{\text{국내의 급여액} + \left( \text{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times \frac{\text{국내에서의 출항회수}}{\text{국제노선 출항회수}} \right)}{\text{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급여액}} \right\} \times \frac{1}{3}$$

= 국내원천소득금액

②영 제179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증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종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18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영위하는 의료업
2.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류의 복사, 속기, 번역, 통역 및 기타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

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제90조(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지의 미국군부대장·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에 대한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left( \frac{\text{상여등의 금액} + \text{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text{지급대상기간의 월수}} \right)$$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2. 법 제1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여의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 × 기본세율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상여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영 제196조 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98조(전산자료 제출대상자) ①영 제2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1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

건 이상 제출한 금융기관

2. 영 제214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자

3. 영 제214조 제3항 제3호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해당 호에 규정된 소득의 지급조서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제100조(일반서식) ①영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징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6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

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 제2항 및 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⑧영 제9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9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신청서에 의한다.

⑩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1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⑬영 제122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별지 제13호서식(1)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2)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에 의한다.

⑭영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 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⑮영 제1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 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⑯영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 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⑰영 제1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⑱영 제1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⑲영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⑳영 제1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㉑영 제18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㉒영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㉓영 제19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 의한다.

㉔영 제200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㉕영 제1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㉖영 제1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㉗영 제20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㉘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㉙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㉔영 제2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㉕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 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2)에 의한다.

㉖영 제2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㉗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감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㉘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㉙제9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㉚제9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①

영 제5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②영 제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

명세서에 의한다.

③영 제57조 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④영 제58조 제5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 및 영 제58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⑤영 제7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⑦영 제1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⑧영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⑨영 제1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⑩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⑪영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⑫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⑬제5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⑭제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⑮제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기부금조정명세서
11.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퇴직급여충당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15.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자본적지출금액명세서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  
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  
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액조정명세서
26.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소득공제  
액조정명세서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28.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공장지방  
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29.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 광업투자  
준비금조정명세서
30.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준비금조정명세서(1)·(2)
31.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32.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 수출손실

준비금조정명세서

33.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34.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35.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3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6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6-6(5)호 내지 제6  
-6(7)호 서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  
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영  
제62조 제7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6호서식  
부표2 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소  
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  
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  
155조 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  
대1주택특별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9조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  
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에 의한다.

③영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  
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

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7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조·제10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31조 제2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9조·제50조·제66조·제68조·제72조 제1항·제77조·제79조 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제71조·제72조 제2항·제73조 내지 제76조·제78조·제79조 제2항·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작업진행율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1세대1주택의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생산자물가상승율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별지서식 생략〉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되어 소득세결정방법이 종전의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1996년 신고소득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고 1996년부터는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에 필요한 서식과 전산매체로 소득자료를 제출할 대상자의 범위등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농가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규모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업규모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영 제6조).
-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영 제62조).
- 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현재는 이사갈 집을 산 날부터 6월내 양도시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던 것을 일반주택의 경우에 비추어 1년내 양도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 라. 상여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해당액(상여액/지급기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1조).
- 마. 총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600건이상인 금융기관, 상시 고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주 및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자료를 600건이상 제출한 자는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자료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데이터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
- 바. 1995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영 제100조 내지 제103조).

〈법제처 제공〉